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최현철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

2025. 1. 21.(화)

「甲은행 불법대출 사건」 수사 결과

- 前 甲금융지주 회장과 친인척, 甲은행 전·현직 임원 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

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(부장검사 김수홍)는 **甲금융지주 前 회장 A**가 甲은행 임원 등을 통해 손위처남 D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게 **23회**에 걸쳐 **합계 517억원의 불법대출**을 해준 혐의로 위 A를 **불구속 기소**하고, 이와 관련하여 甲은행 **前 부행장 B**, **前 본부장 C** 및 위 **D**를 각 **구속기소**하고, 甲은행 **본부장 E**를 **불구속 기소**하였음

- '24. 8. 하순경 수사에 착수하여 약 **5개월간 수사**한 결과, 본건은 **甲금융지주 회장 A를 정점**으로 하여 그 **친인척**인 **대출브로커**, 甲은행 **부행장·본부장** 등 **고위 임원**이 결탁한 **조직적·구조적 대출비리**임이 드러났음

  - **A**는 **D**와 **수십억원의 돈거래**를 하며 **고가의 승용차**를 제공받거나 D를 통해 **수십억원대의 건물 매각 차익**을 취득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왔으며, **D의 요청**에 따라 B 및 C를 甲은행 **대출 관련 핵심 보직**인 여신지원그룹장 및 S금융센터 센터장 등으로 **승진발령**하였음

  - 이 과정에서 A는 **승진추천위원회 심사결과** 및 **징계전력** 등을 이유로 **C의 본부장 승진을 반대**하는 甲은행장을 압박하여 C를 **승진**시키는 등 **인사권을 남용**하였으며, 甲은행 임원들은 A와 D의 눈에 들기 위해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**거액의 불법대출**을 **실행**하였음(그 결과 **433억원의 부실** 발생)

    ※ **C**는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D로부터 **현금 2억원 수수**

- 검찰은 **신속한 수사**를 통해, 약 1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甲은행의 **내부통제절차**가 **철저하게 무력화**되고, 운영자금이 절실한 **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수백억원의 대출금**이 甲금융지주 회장 A 및 친인척 D의 **사적인 목적**을 위해 사용되었으며, A는 이를 위해 지주회장으로써 **인사권을 전횡**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본건 **범행의 전모를 규명**하였음

-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익추구를 위해 자행하는 **불법대출 및 자금 유용** 등 **금융범죄에 엄정** 대응함으로써 **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**을 위해 노력하겠음

Ⅰ 피고인

- A (65세, 前 甲금융지주 회장)
- B (60세, 前 甲은행 여신부행장)
- C (58세, 前 甲은행 S금융센터 센터장)
- D (67세, 대출브로커, A의 손위처남)
- E (54세, 甲은행 본부장, 前 甲은행 본점 중기업심사부장)

Ⅱ 공소사실 요지

前 甲금융지주 회장 A의 범행

- '21. 9.경 ~ '23. 8.경 여신부행장 B, 손위처남 D 등과 공모하여,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 4,500만 원 불법대출 **[특경법위반(배임)]**
- '21. 12.경 甲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,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C의 본부장 승진을 반대하는 甲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C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함으로써, 甲은행장의 적정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방해 **[업무방해]**

B, C, D, E의 범행

순번	피고인	직책	공소사실
1	B	前 甲은행 여신부행장	374억 9,500만원 불법대출 **[특경법위반(배임)]**
2	C	前 甲은행 S금융센터장	① 497억 4,500만원 불법대출 **[특경법위반(배임)]** ② D로부터 불법대출 대가로 현금 2억원 수수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3	D	A 손위처남 (대출브로커)	① 517억 4,500만원 불법대출 **[특경법위반(배임)]** ② 대출알선 수수료 12억 7,500만원 수수 **[특경법위반(알선수재)]** ③ 34억 원 횡령 및 문서위조·행사 등 **[특경법위반(횡령) 등]** ④ C에 대출대가 현금 2억 원 제공 **[특경법위반(증재등)]**
4	E	前 甲은행 중기업심사부장	① 374억 9,500만 원 불법대출 **[특경법위반(배임)]** ② 40억 원 불법대출 인지 후 미회수 **[특경법위반(배임)]**

Ⅲ 수사 경과

- ’24. 8. 27. 甲은행 본점·영업점, D 주거지 ·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’24. 9. 7. D 구속(9. 5. 체포, 9. 24. 구속기소)
- ’24. 9. 27. 前 S금융센터장 C 구속(10. 15. 구속기소)
- ’24. 10. 11. A, B, E 주거지 ·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’24. 10. 31. 前 여신부행장 B 구속(11. 18. 구속기소)
- ’24. 11. 18. 甲금융지주, 甲은행 본점 압수수색
- ’24. 11. 26. 前 甲금융지주 회장 A 구속영장 기각

※ 기각 사유 : 공모관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, 과거에 증거인멸한 정황만으로는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단정 어려움

- ’24. 12. 12. A 구속영장 재기각

※ 기각 사유 : 공모관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

- ’24. 12.~’25. 1. A 조사 등 추가 수사
- ’25. 1. 21. A, E 불구속 기소, B, C, D 추가 기소

Ⅳ 수사 결과

甲**금융지주 회장과 친인척, 甲은행 임원들이 결탁한 조직적 불법대출**

- 본건은 **甲금융지주 회장 A 및 그의 손위처남**이자 **대출브로커**로 활동하던 **D**가 甲은행 임원인 **B**(甲은행 본점 여신부행장), **C**(강남 소재 S금융센터장), **E**(본점 중기업심사부장) 등과 순차 공모하여 수백억 원의 불법대출을 실행한 조직적인 범행임이 확인되었음

- D가 위 S금융센터에 대출을 신청하면 C는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, B는 지점에서 대출승인 신청이 오면 E를 통해 대출을 승인할 것을 지시하여, **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D의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** 517억원의 **불법대출을 실행**한 것으로 밝혀짐

甲은행 대출비리 사건 구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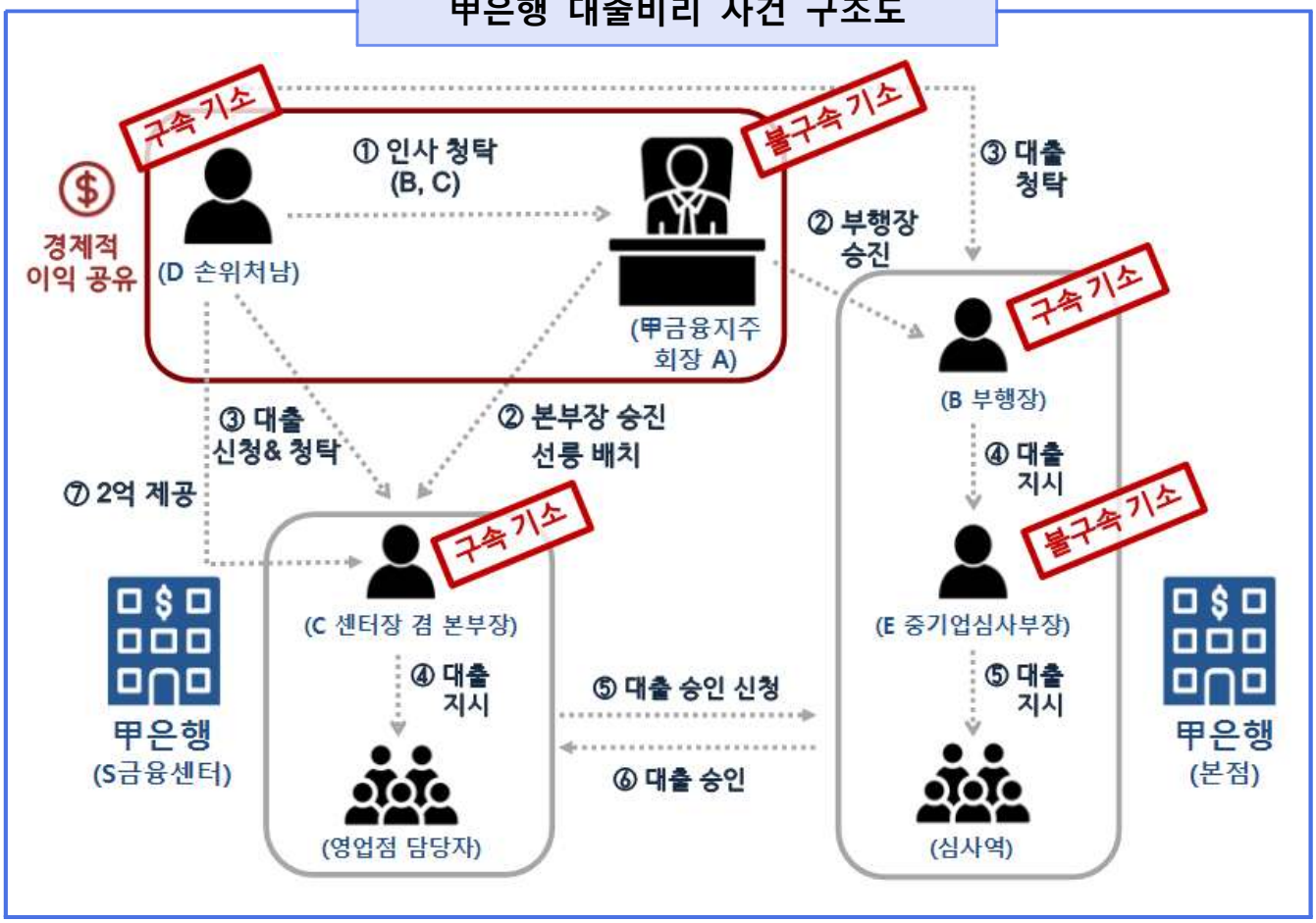

※ ⑤, ⑥ 본점 대출 승인 절차의 경우,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인 경우 등 甲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본점의 대출 승인을 받게 됨

- 한편, **A는 D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**하는 사이로, **'18년경**부터 甲은행 내부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**D가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**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, B 및 C를 **대출에 필요한 핵심보직에 승진발령**하고 B 및 C에게 **D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연락**하기도 하였음

- 위와 같은 조직적·구조적 범행으로 불과 며칠만에 **거액의 불법대출이 손쉽게 승인**되었고, D는 위 대출금을 **D 가족 명의의 건물 취득, 개인 채무변제 등 대출 목적과는 관계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**하였음

부실기업에 대한 대출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

- D는 총 **16개 업체**를 차주로 하여 **23회**에 걸쳐 **합계 517억 4,500만원**의 **불법대출**을 받았고, 이중 **약 433억원**(대출금 대비 **약 83.7%**)이 **변제되지 못함**

- D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**대출이 불가능한 부실업체**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, **자본잠식 상태**이거나 **채무상환능력이 없는 부실업체**에 속칭 '바지 사장'을 내세우고 **위조된 증빙서류**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**8개 업체에 총 257억 9,500만원**의 **대출**을 **알선**하고, **수수료 12억 7,500만원**을 **수수**함

- 또한 자신이 직접 **부실업체**를 **인수**한 다음 사실상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**인적·물적 담보를 제공**하거나 **허위 증빙자료를 제출**하는 등의 방법으로 **8개 업체 명의**로 **총 259억 5,000만원**의 **대출**을 받았으며, D는 다른 대출금으로 **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거나 대출 이자조차 연체**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음

- 이와 같은 불법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은 결국 甲은행 회계상 손실로 상각처리되는 등 **甲은행 및 甲은행 고객 전체의 손해로 귀결**되었고, **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손해**가 발생하였음

인사전횡 및 대출지시를 통한 甲금융지주 회장 A의 범행 가담

- 甲금융지주 회장은 甲은행의 **경영 전반에 관여**하고, 甲은행 내부규정에 따르면 부행장·본부장 등 임원급 인사 시 **甲금융지주 회장**과 **'합의'**하도록 되어 있어, **甲금융지주 회장은 甲은행 인사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**

- 甲은행의 인사시스템을 파악한 D는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**A에게 청탁**하여,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고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**B, C** 등을 **본점 여신지원그룹장**(부행장), 강남 소재 **S금융센터장**(본부장) 등에 **승진발령**하게 하였음

  - 특히, 甲은행장은 **승진추천위원회 심사 결과, 징계전력** 등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근거로 C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으려 하였으나, A는 **수차례에 걸쳐 甲은행장을 압박**하며 C를 **승진**시키고 **S금융센터장**으로 **발령**하도록 요구하였음

  - 결국, 몇차례 C의 본부장 승진을 강력하게 반대한 **甲은행장**은 계속하여 A의 뜻을 거스를 경우 **본부장 승진 인사를 할 수 없게 되고**, 은행장 연임 등에 있어 자신도 **피해를 볼 수 있다**는 판단에 C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킴

- 이후 C는 **S금융센터 센터장**으로서 D가 신청하는 대출을 직접 실행하거나 본점 승인이 필요한 대출은 서류를 정리하여 본점에 승인을 올리고, B는 **본점 여신지원그룹장**으로서 D가 신청하는 대출을 승인하였음

- A는 위와 같은 인사전횡 외에도 **B와 C에게 직접 연락**하여 **D가 요청하는 대출을 실행**하도록 **압박**하였음

  - A는 '21. 12.경 C가 본부장으로 승진하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**본부장으로 승진시켜 준 사실**을 주지시키는 한편 **D를 도와주도록 지시**하였음

  - A는 '22. 11.경 B를 회장실로 직접 불러 D가 알선한 대출을 **잘 챙겨보라**고 하거나, '23. 4.경 甲금융지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에도 B에게 전화하여 **형님을 잘 봐달라**고 이야기한 사실도 있음

甲**금융지주 회장 A의 범행 동기 - 사익 추구**

- D는 甲금융지주 회장 **A의 처의 오빠**(손위처남-매제)인데, A의 범행의 동기는 손위처남인 D를 **단순히 친인척의 관계에서 도와주거나 편의를 봐준 것**이 아니라, D가 **불법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**을 **A와 공유**하며 A에게 수십억원의 **경제적 이익을 제공**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

- A가 甲은행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**승진 가능성이 없던 C를 무리하게 승진**시키고, B, C를 대출승인에 필요한 **핵심보직에 인사발령**함에 따라 D가 수백억 원의 불법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**A와 D가 불법대출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**였기 때문임

  - A와 D는 D가 甲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상호간에 **수십억원의 돈거래**를 하고, D는 A에게 **고가의 승용차**를 **제공**하였으며, A와 D가 함께 甲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**부동산을 매입**한 후 **재매각**하는 등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하였음

  - 또한 D는, A의 **甲금융지주 회장 연임**을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다는 **특정 기업인**에게 **불법대출**을 **알선**해주며 **회장 연임에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**하는 등 甲은행의 자금을 **A와 D가 '개인금고'처럼 사용**하였음

- 결국,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甲금융지주 회장인 A가 여러 경로로 D의 불법대출 건을 보고받아 인지하였음에도 **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**, 오히려 D와 범행을 공모·가담한 동기는 **사적인 경제적 이익추구**임이 명백함

위법한 업무수행을 감시·감독하는 통제장치 부재

- 甲은행 지점 및 본점 **대출담당 직원들**은 대부분 상사의 **부당한 지시에 반발**하며, 대출 **절차를 지연**시키거나 **대출 승인을 거부**하는 등 甲은행 **내부 규정**과 **통상적인 대출 절차**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**최선을 다하였음**

  ※ ▲대출 신청이 들어온 지점 직원이 문제가 있는 대출 건의 차주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대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, ▲본점 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출 승인을 거절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, ▲본점 직원이 문제가 있는 대출 건을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없다며 다시 지점으로 돌려 보낸 경우, ▲대출 건의 문제점을 상세히 정리하여 상급자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경우 등이 확인되었음
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대출담당 직원들은 **인사평가 및 승진 등 인사권**을 가진 **상급자의 집요한 지시**를 거부하지 못하고 차주의 **신용등급을 부당하게 상향**하거나 **형식적인 심사**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으며, 위와 같은 상급자의 **위법한 업무수행**을 **감시·감독**하거나 **통제할 내부적 방법**이 존재하지 않았음

Ⅴ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- 검찰은 '24. 8. 하순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甲**은행 검사결과를 통보**받은 직후 신속하게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, 甲은행 본점 및 지점 등을 **압수수색**하고, **금융거래내역** 및 **통화내역** 분석 등 물적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주요 피의자들의 **신병을 순차 확보**하는 등 **면밀하고 신속한 수사**를 통해 **甲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전모를 규명**하였음

- 검찰 수사 결과, 甲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본건 대출비리는 ▲**금융지주 회장의 독단적인 인사권 행사**가 가능한 **후진적 인사시스템**, ▲은행 내부 **강압적 상하관계**와 **폐쇄적인 소통구조**, ▲내부 비리를 감시·감독할 수 있는 **실질적인 통제장치 부재** 등 **甲은행의 폐단과 악습에 기인한 것**으로 확인되었음

-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 **임직원들**의 **위법행위를 엄벌**하고, **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**을 위해 노력하겠음